

(앞쪽)

제 호				
수렵동물 포획승인서				
승인 받은자 성명			생년월일 (외국인등록번호)	
승인사항	포획기간	. . . ~ . . .		
	포획지역		야생동물별 포획예정량	
	수렵면허증번호		총기의 종류	
「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5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렵야생동물의 포획을 승인합니다. 년 월 일 수렵장설정자 직인				

준수사항

- 야생동물을 포획하려는 경우에는 수렵면허증과 함께 승인증을 휴대하여야 합니다.
- 포획기간·포획지역·야생동물별 포획예정량 등의 승인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
- 야생동물을 포획할 때에는 폭발물·극약·독약·덫·창애 또는 함정 등의 위험한 방법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, 총기는 총기안전수칙에 따라 안전하게 취급하여야 합니다.
- 야생동물을 포획한 후에는 지체 없이 수렵동물의 다리 등에 수렵동물 확인표지를 부착하여야 합니다.
- 포획한 야생동물의 종류·수량 및 포획장소 등을 뒷면에 적어야 하며, 수렵기간이 끝난 후 15일 이내에 포획승인서(포획한 야생동물 내용 기재)와 미사용 수렵동물 확인표지를 수렵장설정자에게 반납하여야 합니다.
- 수렵동물 확인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할 때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.

(뒤쪽)

수렵동물 확인표지 사용현황

[illegible]